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16 압류예고통지취소

2019구합808(공동소송참가) 압류예고통지취소

원 고 A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겸 공동소송참가신청취지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압류예고통지를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위반 면적: 1층 14.59㎡, 2 내지 4층: 각 13.53㎡)을 무단으로 증축하였고(이하 무단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2016. 7. 25. 원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12. 21., 2017. 6. 16. 원고 및 참가인에게, 2018. 1. 25. 참가인에게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609,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및 참가인은 2018. 4. 30.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위반 면적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원고 내지 참가인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원고 및 참가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가 2018. 1. 25. 참가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였다([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9.자 2018-99 재결).

라. 원고 및 참가인은 2019. 2. 14. [redacted]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위반 면적을 취소하고 그 면적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원고 내지 참가인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redacted]지방법원은 2019. 10. 17.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 중 피고가 2018. 1. 25. 참가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였으며([redacted]지방법원 2019구합150호), 위 판결이 2019. 11. 5.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781,470원(= 세액 609,730원 + 가산금 171,7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2019. 2. 28.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D 대지 245㎡를 압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바. 원고 및 참가인은 2019. 2. 21.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증축부분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9. 4. 24.자 2019-28 재결), 원고는 2019. 5. 13. 위 행정심판의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고 한다)를 송달받았다.

사. 피고는 2019. 5. 15.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D 대지 245㎡를 압류하고, 2019. 8. 21.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2016. 3. 17. 이 사건 증축부분 중 2층을 창고 및 보일러실의 용도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 전체를 주택 용도로 보고 위반 면적을 과다하게 측정하여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D 대지 245㎡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 · 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참가신청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22

할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공동소송참가는 실질적으로 신소 제기의 성격이 있는데, 원고가 2019. 5. 13.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9. 3.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및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